파견교원 선생님들께서는 복무 관련 아래의 사항 유의 부탁드립니다.

1. 파견국 외 제3국 방문

- 파견국 외 방문은 재단의 승인이 필수입니다.

"파견국 외 휴가 신청서"(양식)를 활용하여 학당 담당자를 통해 재단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만약 파견국 외 국가 이동 시 미승인 건에 대해서는 무단이탈이 되어 파견 교원 지침 제42조에 따라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2. 통상근무시간 및 근무지 / 근무지 좌표

- (통상근무시간) 파견교원의 주 근로시간은 40시간(수업15~20시간, 학당 행정 20~25시간)이며, 이를 준수해주십시오. 통상근무는 학당의 수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당과 논의 후 연속된 시간으로 8시간(휴게시간 포함 9시간) 근무하셔야 합니다. 통상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할 때는 주말 제외 최소 3일 전까지 학당 담당자 (복무 담당자)에게 연락주십시오.
- 통상근무시간에 맞춰 출퇴근 기록을 남겨주시고, 통상근무시간을 지나치게 벗어나 근태기록을 남길 경우에는 재단은 근태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(근무지) 파견 교원의 근무지는 학당이며, 학당과 협의 하에 일부 재택 근로를 진행하게 되면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.
 - (근무지 좌표) 근무지 좌표가 사외로 기록되는 경우 복무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. 근무지 변경 또는 근태기록 시 지속적으로 사외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근무지 좌표를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근무지 좌표 변경 신청을 해 주십시오.

3. 야간근로 및 시간외근무

- (야간근로) 야간근로(22시~익일6시)는 국내(한국) 근무자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으며, 사전 승인(시행 5일 전)이 필수입니다.
- (시간외근무) 시간외근무는 시행 3일 전까지 학당 담당자에게 연락주십시오. 시간 외근무는 통상근무시간에서 먼저 근무시간 조정을 진행해주십시오. 주말 혹은 개 인 휴무일에 학당의 행사/시험이 진행될 시 신청 가능합니다.
- "초과근무신청서"(양식) 작성 시 최소 4시간 이상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. 초과 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부여는 근무 확인 후에 진행되므로 반드시 에버근태 기록을 남겨 주셔야 합니다.

4. 병가

- 병가는 연간 6일 이하의 경우 병원 방문한 당일에 한해서는 병원 영수증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.
- 연속으로 2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(명확한 기간 필수) 가 필요합니다. 6일 이상 장기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진 단서를 제출해주십시오.

5. 일시귀국

- 일시귀국도 재단의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. 갑작스럽게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도 반드시 재단 복무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별 휴가, 비자 발급 등 파견 교원 지침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한 개인 연차를 사용한 일시귀국의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이 원칙입니다. 일시귀국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체제비 지급이 불가합니다. 지급된 체제비가 환수될 수 있으니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.

6. 공휴일

- 파견 교원은 파견국의 법정공휴일을 기준으로 휴무가 부여됩니다. 현지 운영기관 자체 휴무일은 이와 관련이 없으며, 해당 일자에도 재택 근무 형태로라도 근무하셔 야 합니다. 만약 현지 운영기관 자체 휴무일에 근무를 하시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주십시오.
- 임시공휴일이 발생 시 학당 운영요원이 학당 담당자에게 증빙과 함께 메일 보내달 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7. 개인유급연차휴가

- 파견교원은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1달이 지날 때마다 연차가 1일 부여됩니다. 1년 차까지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되며, 2년차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. 연차는 1년차 종료, 2년차 종료 시점에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개인 휴가는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후, 학당장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. 유급연차를 사용한 일시귀국, 제3국 방문은 위 1번, 5번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- 개인유급연차휴가 외에도 특별 휴가 등이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"파견교원 지침"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8. 미운영기간 중 근무

- 파견교원은 방학 등 미운영기간에도 주40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 미운영기 간 시작 10일 전, "미운영기간 활동계획서(양식)"을 제출하고, 미운영기간 종료 후 '결과보고서'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이 밖의 복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파견 교원 지침을 확인해주시고, 의문이 있으시면 재단 복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